

4.2.5 부설연구소연구원임용및위촉규정

제정 2000. 04. 2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부설연구소의 연구원 임용 및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연구소의 연구원은 석사학위과정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한다.

제3조(구분) ① 연구원은 일반연구원, 특별연구원, 객원연구원으로 구분한다.

1. 일반연구원 :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임용된 자

2. 특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: 특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국내외 기관의 연구원, 학자 또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자나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가 본 대학교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의 허락을 받고 위촉된 자

② 특별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임용 및 위촉) ① 일반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.

② 특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임용기간) ① 일반연구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재임용 할 수 있다.

② 특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재위촉 할 수 있다.

③ 임용기간 또는 위촉기간이 만료된 후 재임용 또는 재위촉이 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면직된다.

제6조(정원) ① 일반연구원의 정원은 매년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정한다.

② 특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의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의무 및 임무) ① 일반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매년 임용기간 내에 1편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발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활동에 참가하고 업무를 보조하며 연구소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겸직제한) 일반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은 본 대학교외에 다른 기관의 전임을 겸할 수 없다.

제9조(준용 및 적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초당학원 정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